

서 울 특 별 시

우100 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31-6156~8 / 전传 731-6562

문서번호 법무 11360-199

시행일자 1993.1.3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준 영 구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 담당관		
법제 계장		
기안	장 학 준	
		협조

제목 훈령발령

1.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개정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훈령안 1부, 끝.

파스 스크 위탁 해상 문서

(제 2 안)

수신 공보관

759

참조 공보1담당관

제목 시보계재

1.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발령할 것.

첨부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제 3 안)

수신 도로시설과장

참조 훈령발령 통보

1. 도설30500-86(93.1.27)호와 관련입.

2.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첨부 :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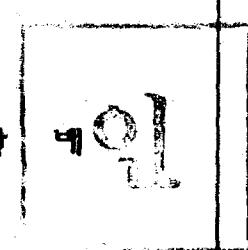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경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 93 년 2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이 상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개정규정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제24조, 하수도법 제8조, 하천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원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유지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차도, 보도, 고가차도, 보도육교, 지하보차도, 터널, 교량, 임체시설, 도로부속물(경계석, 축구, 중앙녹지대, 벤홀, 빗물받이, 가로등, 보안등, 난간, 웨스, 도로옹벽, 공동구, 방음벽, 재방송시설 등) 및 하천(하천복개), 하천부속물(수문, 육갑문), 구거, 하수도(차집관거와 그 부대시설 포함)등 기타 도로상 시설물과 하수가스배관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 관리의 총괄적인 책임기관을 말한다.
3. "유지보수공사"라 함은 시설물로서의 기능유지 및 증대를 위한 시설물개량 또는 보완을 말한다.
4. "유지관리"라 함은 시설물로서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시설물을 보전함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소속기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물에 적용한다.

제 4 조 (관리청의 지정)
① 시설물의 관리청은 관할구청장이 된다. 다만, 구간 경계선에 걸쳐있는 시설물의 관리청은 서울특별시구의 공공시설관할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된 관할구청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지정된 시설물이외의 시설물 관리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제 5 조 (유지보수공사의 업무구분) 유지보수공사의 업무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 6 조 (순찰) ① 관리청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순찰계획을 수립하고 그 책임자를 지정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순찰결과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유지보수공사부서에 통보하고 경비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찰책임자는 순찰 및 경비설치에 대한 원지를 미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시설물의 안전점검) ① 유지보수공사부서의 장은 점검목록(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2월, 8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1부는 자체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하천복개시설물 및 차집관지에 대하여 주요 취약지점을 선정 월1회이상 하수가스 발생 및 배기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하수가스 채취장소는 관리청과 연구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하수가스 농발 위험이 있는 취약지점을 우선 선정한다. 이때 주변토지 이용상태 및 하수가스 발생원인이 되는 지역내 사업장의 종류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수가스 조사요청이 있을 때는 연구원장은 즉시 시료를 채취, 시험하고 그 시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도로표지판, 안내표지판 등을 수시 확인하여 시정할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유관부서에서 시정 조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요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 8 조 (유지보수 계획의 수립) ① 유지보수공사부서의 장은 시설물 점검결과에 따라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특히 시장이 지시한 사항 또는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시에는 시설물 개·보수에 대한 현황, 보수개요, 흰황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관제규정)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아래 각호에 있는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2.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3. 도로교 표준시방서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품질관리 규정
7.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각종지침등

제 10 조 (상시보수) 관리청은 시설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 유지보수공사부서로 통보하여 유지관리에 민첩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정기보수) ①춘계보수는 해빙기에 대비한 전반적인 보수와 하절기의 강우 및 홍수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충돌적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추계보수는 윌동에 대비한 보수와 통계 적설 및 결빙을 예상한 소요자재의 비축과 장비의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③정기보수는 제 7 조 및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보수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긴급보수) 관리청은 재해발생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긴급보수가 불가피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유지보수공사부서에 통보하여 항구 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 조 (비치서류)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있는 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순찰일지(별지 제5호서식)
2. 작업일지(별지 제6호서식)
3. 시설물 관리카드
4. 재해위험시설물 관리카드
5. 기타 보고서류 및 증명서류

부 칙

이 규정은 반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지보수공사의 업무구분

○ 도로 및 도로시설물

구 분	구 청 장	건설사업소장	비 고
도 로	업무내용	. 도로의 보수 등 관리청 으로서의 총괄적인 유지관리	. 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보수공사
	대 청	.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유지보수 . 건설사업소 소관이외 도로 및 도로부속물업체 의 유지보수 -보도, 맨홀, 중앙분리대 -난간, 햄스, 방유벽, 공동구, 도로옹벽 -가로등, 보안등, 재방송시설 -기타 도로부속물	.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유지보수 . 자동차전용도로유지보수
도 로 시 설 물	업무내용	. 시설물의 보수 등 관리 청으로서의 총괄적인 유지관리	.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보수공사
	대 청	. 폭20m미만 도로상에 진설된 교량 . 터빈, 지하보차도, 보도육교 . 건설사업소 소관이외의 도로시설물 일체 . 건설사업소 소관시설물을 포함한 모든시설물 의 청소, 난간도색, 배수 구 정비	. 폭20m이상 도로상에 진설된 교량 . 자동차전용도로상 교량 . 한강상교량 . 일체교차시설 . 고가차도

○ 하천 및 하수시설물

구 분		구 청 장	한강관리사업소장	하수처리사업소장	비 고
하 천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할 지방 준용 하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한강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 유지관리 (교량, 도로 및 하수 차집관거 등 기능별 시설물 제외) 		
시 설 물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펌프장 · 육각문, 수문 · 하천제방, 호안공 수제공, 유수지등 · 직할 지방 준용 하천(한강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 		
하 수 시 설 물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복개구조물 유지관리 · 한강이외의 차집 관거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하천내 차집관거 준설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의 차집 관거 및 부대 시설 순찰 및 유지관리 · 처리구역내의 하천차집관거 준설 	
하 수 시 설 물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복개구조물 · 하수관거 및 하수 도 부대시설 · 한강이외의 차집 관거 및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본류상의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물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보고서

· 시설물명 :

· 점검일자 :

· 점검자 : (인)

분야별	점 검 목록	비비 사항	조치 사항	비 고
청소 상태	1. 천정 2. 벽체, 구체 3. 노면, 상판, 바닥, 출입구 4. 난간, 계단, 논스텝타일			
구조물 파 손 상 태	5. 빔(BEAM), 거더(GIRDER), 상판 6. 슈 및 받침대 7. 교각기초(세곡, 부식) 8. 암거, 복개스라브 9. 계단, 난간, 관리실 10. 터널구체, 미장벽 11. 신축이유			
누 수 상 태	12. 천정, 용벽, 터널구체 13. 벽체(백화현상) 14. 바닥			
도 장 상 태	15. 천정, 입구 16. 교각, 난간, 뷔, 강재보 17. 페스, 가드레일, 방음벽 18. 통과높이 표시판			
배수 및 누 면 시설물 상 태	19. 흡동, 축구의 배수 및 준설 20. 배수로, 맨홀상태(뚜껑요진) 21. 방향 및 교통표지판 22. 차도유교, 보도유교의 낙수 23. L형축구, 경계석의 침하 24. 차도의 침하균열 25. 보도의 침하파손 26. 기타 부대시설물의 파손 27. 도로상 공사장 정리상황 28. 배수펌프 작동상태			

하천 및 하수시설물 안전점검 보고서

· 시설물명(구간) :

· 점검일자 :

· 점검자 : (인)

분야별	점 검 목 빠	비파 사항	조치 사항	비 고
복 개	1. 상판마모및 균열 2. 복개스마트 차면부식 3. 지판및 기초세움 4. 신축이음 5. 맨홀 6. 가스배기시설			
구조물	7. 재방천단및 소단 8. 범면및 교수부지 유실 9. 하천구역 내의 수복경작 10. 하천공작물 11. 호안시설물 12. 하상요철(웅덩이) 기타			
개 거 (옹벽)	13. 기초세움 14. 침하, 활동 15. 구체균열			
하 수 관 거 및 부 대 시 실	16. 관거파손 17. 관거내 이물질 퇴적 18. 관거맨홀뚜껑 망설및 파손 19. 빛돌받이,U형축구등 뚜껑망설 및 파손 20. 고지수로 맨홀, 준설상태			
차 점 관 거	21. 구조물 손괴, 퇴적상태 22. 맨홀뚜껑망설및 파손, 개폐상태 23. 우수토설및수문 가능및이물질 퇴적 24. 가스배기시설 손상, 파손 25. 청소용구 투입구 망설, 파손 개폐상태			

벗불 범포장 점검보고서

○ 범포장명 : 벗불 범포장
 ○ 시설규모 : 모터범포 (1HP) × 대, 엔진범포 (1HP) × 대
 ○ 점검일자 : 1991년 월 일
 ○ 점검자 : (작) (성명) (인)

분야별	시설물명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의견
기전분야	면전실	1. 불고위 기기 및 선로상태(크래프, 터미널, 예자 등) 2. 점지상태 3. 보호장치 상태 4. 절연저항 측정 5. 면악기 불상상태 및 주유		
	수배전반	1. 배전반 각 기기 상태 2. 뒷데리 및 정류장치 가능 3. 크레인 작동상태		
	기계실	1. 모터범포 상태, 디젤엔진 상태 2. 구리스범포(냉각수) 상태 3. 크레인 작동상태 4. 기타 기계시설 고인물 완전배수 여부		
	기타	1. 배수문(전동장치)의 작동상태 2. 누전(고온, 저온) 여부 3. 기타 화재예방 상태 4. 소화기 비치여부		
도록 인민분야	배수관로	1. 관연 여부 2. 침하 여부 3. 암기파손 여부		
	수분	1. 수분구조물 관연여부 2. 문비 주위를 오물, 토사 여부 3. 문비 고무마킹 노호여부 4. 경고판 부착상태 5. 햄들, 키 보관상태		
	유수지	1. 바닥 준설상태 2. 도수로 정비상태		
	호안보역	1. 호안보역 침하여부		
	웨스	1. 웨스 파손 여부		
	건물, 축대	1. 관연여부 2. 침하여부 3. 기타		
	인민상태	1. 주위 환경정비 상태 2. 관리원 관무상태		

<별지 제4호 시식>

수 문 진 검 표

진검자 지명 :

구청명 : 수문명 : 위치 : 성명 :

진 검 사 항	진 검 결 과	조치 사 항
1. 권양기 작동여부		
2. 문비완전 개폐여부		
3. 문비 흡통상태		
4. 문비활동판 및 바킹상태		
5. 핸드레버 관리 상태		
6. 전기시설 연결상태		
7. 브레이크 작동상태		
8. 암거내 준설상태		
9. 암거내 군열상태(전면적)		
10. 수문상자내 사다리상태		
11. 감속기 등 기어 구리스 주입여부		
12. 수문자체 부식 여부		
13. 수문상자 구체파손 여부		
14. 도색상태		
15. 관리자 지정여부(성명)		
16. 수문대장 관리상태		
17. 수문원쇠 관리상태		
18. 경고판 관리상태		
19. 수문관리자 수문 개폐시기 인지여부		
20. 부품확보 상태(조작스위치, 휴즈 마그네트, 구리스, 통판, 고무판 등)		

<별지 제5호 서식>

수 칙 일 지

일시	위 치	직 출 사 험	처 리 부 서	통 보 임 자	순찰자		검 재		비 고
					직 명	성 명	계 장	과 장	

<별지 제6호 서식>

작 업 일 지

일시	작업위치	개 요	적 출 보 수 통 보			결 재			비 고
			통보임	완료임	기 관	계 장	과 장		